



## 총무팀 운영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4-1-8
제정일자	2011.12.19
개정일자	2019.12.18
책임부서/팀·계	사무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사무처의 총무팀의 합리적인 운영과 종합적인 계획을 다루는 총무팀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<2019.12.18. 개정>

**제2조(조직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3조(위원장 및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(회의소집 등)**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다음사항 시 이루어질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2.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.

**제5조(의결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총무팀 운영에 관한 주요업무의 심의 및 규정에 관한 사항 <2019.12.18. 개정>

2.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

**제7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간사는 본 대학 사무처 사무담당을 당연직으로 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